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권영세 · 이인선 · 최수진
고동진 · 서천호 · 김기웅
임종득 · 김소희 · 백종현
조은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, 시·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·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면서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.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선거의 대담·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82조의2제2항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이상”을 “이상.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·도지사선거의 대담·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.

다만,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1회를 추가로 개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2조의2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 ① (생략)	제82조의2(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는 시·도지사선거 및 비례대 표시·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 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·토론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시· 도지사선거의 대담·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 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.</u>
1. 시·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 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<단서 신설>	1. 시·도지사선거 ----- ----- <u>이상. 다만,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1회를 추가로 개최하여야 한다.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⑭ (생략)	③ ~ ⑭ (현행과 같음)